

서울교육대학교 & 영등포구청

『지역 평생교육 활성화』를 위한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장애인, 어르신, 다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,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영등포구청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의 공동 발전과 상호 증진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 교류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기간)

- ① 본 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양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3조 (협력분야)

양 기관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·학 협력교류를 추진한다.

- ① 장애인, 어르신, 다문화가정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진흥에 대한 사항
- ②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, 개발에 대한 사항
- ③ 평생교육 및 청소년 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 수요·자원 분석,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대한 사항
- ④ 영등포구청 직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수강료 감면에 대한 사항
- ⑤ 성인 및 청소년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
- ⑥ 교육 시설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
- ⑦ 기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 (상호평등의 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교류협력에 있어서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5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3.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6조 (협약의 발효)

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영등포구청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

제7조 (협약의 해석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 (비밀 보호 의무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본 조의 의무는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.

제9조 (협약기타)

- ① 본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하며 협력분야별 각 사업의 세부 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문서로 협의 및 합의한다.
-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영등포구청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 년 4 월 23 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총장 신 항 균

신 항 균



영등포구
YEONGDEUNGPO-GU

구청장 조 길 형

조 길 형